

[별표 1의3]<신설 1986.11.11>

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·시설·설비기준(제5조 관련)

1. 인력기준

| 구 분 | 사업장 150개소 또는 근로자 15,000인당 | 자 격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인 력 | | |
| 의 사 | 1인이상 | 예방의학전문의(다만, 보유인력의 2분의 1까지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대체할 수 있다) |
| 간 호 원 | 2인이상 |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(다만, 보유인력의 2분의 1까지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) |
| 산업위생 관리기사 | 2인이상 |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이상 및 산업위생 관리기사 2급이상 각 1인이상 |

2. 시설기준

가. 건강상담실

나.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

3. 설비기준

가. 분진, 특정화학물질,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채취기

나. 광전분광광도계 또는 광원광도계

다. 검지관방식에 의한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측정기

라. 천평(0.01밀리그램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)

마. 소음측정기

바. 건조기

사. 분진측정기

아. 기온·기습·기류·복사열·조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

자. 산소농도측정기

차. 일산화탄소측정기

카. 현미경

타. 피토티튜브등 국소박이 시설의 성능시험장비